

교원전공심화교육지원규정

제정	2001. 3. 1
개정	2005. 6. 1
개정	2012. 3. 1
개정	2018. 5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‘우리 대학’이라 한다) 교원의 경쟁력 제고와 교육과정 혁신 일환으로 교원전공심화교육(이하 ‘심화교육’이라 한다)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우리 대학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.

② 심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절차) ① 심화교육의 신청자는 교육의 목적, 교육과정의 내용 및 강의 개선방안을 스쿨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(삭 제)

③ 심화교육은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매년 학기별로 신청 할 수 있다.

④ 교수역량지원센터운영위원회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심의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⑤ 심화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한다.

제4조(지원방식) ① 심화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대학이 부담한다. 다만,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우리 대학과 수혜 교수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.

② 교육비의 지급기준은 신규 지원자를 우선하여 배정하고, 기 수혜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전공심화의 교육비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.

⑤ 교육비 지원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기타) 전공심화 과정은 국내 온·오프라인교육과 국외 온라인 교육에 한하며, 교육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첨1)

교원전공심화교육 신청서

신청자	홍길동 외 000	소속	000스쿨	지원형태	개인 / 그룹
		직위	조교수	근속연수	3년
		이메일		연락처	
교육명					
교육기관					
교육일정	년 월 일 ~ 월 일 (00일간 00시간씩 총 00시간)				
교육의 목적과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• 				
교육내용					
기대효과					
소요예산 세부항목	지원가능 항목: 교육비, 온라인수강료 등			총	원

위와 같이 교원전공심화교육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성명:

(인)

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

(별첨2)

교원전공심화교육 스쿨원장 추천서

신청자	홍길동 외 000	소속	000스쿨	지원형태	개인 / 그룹
		직위	조교수	근속연수	3년
		이메일		연락처	
교육명					
교육기관					
교육일정	년 월 일 ~ 월 일 (00일간 00시간씩 총 00시간)				
지원액수					
상기 지원자 추천사유					
교육의 목적과 필요성	스쿨 교육과정 및 담당교과목의 강의 개선방안 측면과 스쿨 발전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추천 사유 작성				
교육내용 및 교육형태의 적합성	상동				
기대효과	상동				

위와 같이 상기 지원자를 추천합니다.

2018. .

성명:

(인)

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

(별첨3)

교원전공심화교육 결과보고서(요약)

신청자	홍길동 외 000	소속	000스쿨	지원형태	개인 / 그룹
		직위	조교수	근속연수	3년
		이메일		연락처	
교육명					
교육기관					
교육일정	년 월 일 ~ 월 일 (00일간 00시간씩 총 00시간)				
교육의 목적과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• 				
교육내용					
교육성과					
향후 활용계획					
소요예산 (항목별 세부)				총	원

위와 같이 교원전공심화교육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.

20 . . .

성명: (인)

- 첨부: 1. 결과보고서(특성화사업 결과보고서 양식 활용)
 2. 교육이수 증빙자료(이수증, 사진, 기타 증빙자료 등)

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